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3가합1038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균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장소연

변론 종결2024. 10. 11.

판결 선고2024. 1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과 D,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들과 D,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은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3. 접수

제129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0. 접수 제199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성동구 F 대 1,652.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7. 14. D, E(개명 전 G), H, I, J, K, L 명의로 2009. 6.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D 11/100 지분, E 5/100 지분, H 18/100 지분, I 17/100 지분, J 27/100 지분, K 17/100 지분, L 5/100 지분).

나. M는 2019. 9. 18. D에게 5,6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D, E, H, I(이하 'D 등'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원고가 D 등을 대신하여 M에게 위 나항 기재 5,600,000,000원을 변제하였거나 원고가 직접 대여하였으므로 변제충당 후 남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5616호), 위 제1심법원은 2022. 12. 20. '원고가 D에게 직접 위 5,6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D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상계충당과 변제충당을 하고 남은 5,031,286,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이 항소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3나11213호), 위 항소심법원은 2024. 5. 1. '원고가 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5,6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D은 875,209,439원, E는 397,822,472원, H은 1,432,160,901원, I는 1,352,596,4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9.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0. 12. 24. D 등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이행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부분 가운데 D 등 지분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단53715호), 이에 D 등이 이의하였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 1. 25. 2,00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단52988호), D은 2023. 2. 2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D, E와 사이에 2023. 2. 3. 이 사건 부동산 중 D, E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023. 2.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D, E,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023. 2. 3.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들은 D, E와 사이에 2023. 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D, E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023. 2.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2023. 2.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채무자 D, E,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023. 2.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 E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이 사건 2023. 2.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과 이 사건 2023. 2.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2023. 2. 3.자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들은 이 사건 2023. 2.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

1)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판결에 따른 원고의 D, E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D에 대한 채권: 875,209,439원 및 이에 대한 2020. 9. 5.부터 2024. 5.

1.까지 연 11%,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E에 대한 채권: 397,822,472원 및 이에 대한 2020. 9. 5.부터 2024. 5. 1.까지 연 11%, 202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한편, 위 기초 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제1심판결의 가집행주문에 따라 D 명의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2023. 2. 9. 4,766,289원, 2023. 2. 14. 1,142,269원을 회수하였고, 2023. 2. 27.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청구금액: 2,001,000,000원)을 받아 2023. 4. 4. 2,000,613,698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23. 2. 9. 회수한 4,766,289원은 위 875,209,439원의 2020. 9. 5.부터 2023. 2. 9.까지의 이자 234,220,432원($= 875,209,439원 \times 0.11 \times 88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먼저 충당되어 원금 875,209,439원, 이자 229,454,143원이 잔존하게 되고, 위 2023. 2. 14. 회수한 1,142,269원은 위 이자 잔존액 229,454,143원과 875,209,439원의 2023. 2. 10.부터 2023. 2. 14.까지의 이자 1,318,808원($= 875,209,439원 \times 0.11 \times 5일/365일$)에 충당되어 원금 875,209,439원과 이자 229,630,682원이 잔존하게 되며, 원고가 2023. 4. 4. 회수한 2,000,613,698원은 위 잔존 이자 229,630,682원과 875,209,439원의 2023. 2. 15.부터 2023. 4. 4.까지의 이자 12,924,325원($= 875,209,439원 \times 0.11 \times 49일/365일$) 및 원금 875,209,439원에 충당되었는바, 원고의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잔존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잔존하는 공탁금회수채권 882,849,252원($= 2,000,613,698원 - 229,630,682원 - 12,924,325원 - 875,209,4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기초 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전부채권자인 주식회사 N은 2023. 9. 14.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P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합계 920,263,058원($= 470,263,058원 + 450,00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920,263,058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D은 2024. 5. 7. E, H, I에게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24. 8. 21.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E, H, I는 2024. 8. 23. D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는바, D이 E에게 양도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30,000,000원이므로(D이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2024. 8. 23. 이전에 원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24. 8. 23.까지의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계적상일인 2024. 8. 23.까지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 572,709,447원[= 397,822,472원 + $397,822,472\text{원} \times 0.11 \times (3\text{년} + 240\text{일}/366\text{일}) + 397,822,472\text{원} \times 0.12 \times 114\text{일}/365\text{일}$]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530,000,000원을 상계하면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은 42,709,447원이 잔존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3746, 93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D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Q 계좌로 2023. 2. 3. 1,000,000,000원, 2023. 2. 20. 500,000,000원, 피고 C가 2023. 2. 20. 위 법무법인 Q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법무법인 Q 계좌에서 서울동부공탁소 계좌로 2,0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이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금으로 납입된 사실, 원고는 2023. 2. 27.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원고가 2023. 4. 4.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 E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것이고 그 변제자력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곤

판사장동규

판사유지윤

별지